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3
----------	--------

제출년월일 : 202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강료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기준 정비

- 1) 수강료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2) 수강료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제11조)

나. 사용료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기준 정비

- 1) 전용사용료 납부 규정 정비(안 제10조제1항)
- 2) 유효기간 경과한 사용료 감면 규정 삭제(안 제11조제5항)
- 3) 사용료 항목 신설 및 정비(안 별표 2 ~ 별표 4)

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1) 사용료 반환 면책 기준 구체화(안 제9조, 제10조)
- 2) 관리·운영주체 귀책 위약금제 신설(안 제9조, 제10조)
- 3) 이용자 귀책시 위약금 상한선 10%로 변경(안 제10조)

라. 개인사용료 등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마. 스포츠클럽 전용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제2호)

- 바. 이용자 사용 제한 및 퇴장 사유 추가(안 제12조제2항)
-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항목 신설 및 정비(안 별표1)
-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5조제1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1.05.)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강료”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려는 개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을 “(개인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를 각각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제10조제1항 중 “사용료의 추산액을”을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 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중 “30일”을 “7일”로, “사용료의 10분의 8”을 “사용료 전액 반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일”을 “6일 전부터 1일”로, “7”을 “9 반환”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제11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을 “(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수강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인사용료의”를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1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을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이
공익 목적의 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중 레슨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5.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경우

6. 이용자 상호간 법적인 다툼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댄스 등 체육활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 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 성 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 볼링화 대여 : 1,000원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 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다목적 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청소년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3] <개정 2018.12.27., 2020.2.27.>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 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 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2레인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p>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p> <p>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p> <p>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 체육관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 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 체육센터	종합 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 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 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 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p>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p> <p>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수강료”란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체육·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p>
<p>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체육시설을 <u>사용하고자 하는 사람</u>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 ① ----- <u>사용하려는 개인</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u>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u>) ① 이용자는 제8조에서 정한 <u>사용료</u>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u>사용료</u>를 반환한다.</p> <p>1. <u>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u></p>	<p>제9조(<u>개인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u>) ① ----- <u>사용료 등을</u> ----- -----.</p> <p>② ----- ----- <u>사용료 등을</u> -----.</p> <p>1.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p>

- 가.·나. (생략)
- 2. (생략)
- <시설>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전용사용 신청자는 사용료의 추산액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가.·나.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제10조(전용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 사용료를 -----

-----.

②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가.·나. (생략)

2. 이용자가 취소 또는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 개시일 3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8

나. 사용 개시일 2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7

다. 사용 개시일 10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6

라. 사용 개시일 3일 전 : 납부한 사용료의 10분의 5

<신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및 할증)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개인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인정될 경우

가.·나. (현행과 같음)

2. -----

-----.

가. ----- 7일 -----
- 사용료 전액 반환

나. ----- 6일 전부터 1일
----- 9 반환

<삭제>

<삭제>

3.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 사용 개시일 전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이후 :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및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

증) ① -----
----- 사용료 및 수강료-----.

1.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

가. ~ 아.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가.·나. (생략)

다. 삭제

<신설>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

가.·나. (현행과 같음)

라.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구 스포츠클럽이 공익 목적의 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

-----.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중 레슨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별표 1] <개정 2020.2.2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 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 구민 체육 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 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동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2(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 (창전동)
망원동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 (망원동)
망원유수지 풋살장		풋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5. 만취 또는 의식이 불명한 경
우

6. 이용자 상호간 법적인 다툼
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
래할 경우

[별표 1] <개정 2020.2.27.>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칭	구분	기능	위치
염리 생활체육 관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체육 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61(염리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체조, 검도 등 체육활동	
마포 구민 체육 센터	종합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등 체육활동 및 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5길 190 (망원동)
	다목적 소체육관	요가, 체조, 스포츠댄스, 에어 로빅 등 체육활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볼링장	볼링	
망원 나들목 체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및 행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73(망원동)
체력단련실	헬스, 체력단련장		
성미산체 육관	종합 체육관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산동)
	다목적 체육실	요가, 덴스 등 체육활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풋살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90 (망원동)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트랙, 조깅트랙, 자전거 트랙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테니스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길 39(망원동)
와우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30길 87(창전동)
만리배수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7길 16(아현동)
연남동 녹지대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43(연남동)
상암저류지 인라인트랙		인라인트랙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633(상암동)
성산 당구장		당구아카데미 전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별표 2] <개정 2020.2.27.>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 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개인사물함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망원동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동 테니스장			3,000 ~ 6,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p>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와우산 배드민턴장과 망원동 배드민턴장은 바다, 바람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p> <p>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별표 2] <개정 2020.2.27.>

개인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대상	사용료	비고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사용료 기준 - 1회 2시간 - 월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다목적소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 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 만18세 어린이 만12세 이하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개인사물함 특대 : 7,000원 대 : 5,000원 중 : 3,000원 소 : 2,000원	
		청소년	1,500 ~ 3,000		
	볼링장	성인	1게임당 2,500 ~ 4,500	* 볼링화 대여 : 1,000원	
		청소년 어린이	1게임당 2,000 ~ 4,000		
	망원나들목체육관	종합체육관	성인	2,000 ~ 4,000	*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
			청소년	1,500 ~ 3,000	
			어린이	1,000 ~ 2,500	
헬스장		성인	2,000 ~ 4,000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 1면 2시간	
청소년	1,500 ~ 3,000				
와우산 배드민턴장			2,000 ~ 4,000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10,000 ~ 18,000		
성산 당구장	성인		4,000 ~ 7,000		
	청소년		3,000 ~ 6,000		
<p>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p> <p>2.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보완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p> <p>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p>					

[별표 3] <개정 2018.12.27., 2020.2.27.>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망원동 테니스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1일, 1면당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p>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p>				

[별표 3] <개정 2018.12.27., 2020.2.27.>

전용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체육경기	일반행사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55,000 ~ 100,000	80,000 ~ 16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다목적체육실	15,000 ~ 40,000	30,000 ~ 6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00,000 ~ 200,000	200,000 ~ 40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농구코트 1면당
	다목적소체육관(大)	30,000 ~ 60,000	60,000 ~ 120,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5,000 ~ 40,000	3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30,000	20,000 ~ 40,000	
	볼링장	(체육경기 시) 평일 : 50,000 ~ 70,000 토요일·공휴일 : 60,000 ~ 80,000	-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90,000 ~ 150,000	-	* 사용료 기준 : 1면, 10시간	
망원유수지 풋살장	30,000 ~ 8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면당	
성산 당구장	10,000 ~ 30,000	-	* 사용료 기준 : 2시간, 1테이블당	
<p>1. 일반행사란 체육경기가 아닌 문화, 예술, 교육, 발표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p>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2.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음향, 냉난방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4.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개정 2017.2.9>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별표 4] <개정 2017.2.9>

그 밖의 시설 사용료의 범위(제8조 관련)

(단위 : 원)

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음향장비	냉난방		
염리생활체육관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30,000 ~ 40,000	※ 사용료 기준 : 2시간, 4계절 권장온도	
	다목적체육실	10,000 ~ 15,000	10,000 ~ 20,000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	15,000 ~ 25,000	40,000 ~ 60,000		
	다목적소체육관(大)	10,000 ~ 15,000	15,000 ~ 25,000		
	다목적소체육관(中)	10,000 ~ 15,000	10,000 ~ 20,000		
	다목적소체육관(小)	10,000 ~ 15,000	5,000 ~ 10,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를,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연습(리허설) 시간의 사용료는 50%를 할인한다. 3.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망원나들목 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등)
-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
- (3)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운영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망원나들목 체육관 :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운영수익 적자 예상)
- 나. 망원나들목 테니스장 : 매년 위탁료 징수 (운영수익 흑자 예상)
- 다. 2019년도 마포스포츠클럽 대관료 감면비용 : 18,000천원
- 라. 비용추계기간 : 2021. 1. ~ 2025. 12.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체육관	시설이용료	119,577	123,164	126,859	130,665	134,585	634,851
		시설대관료	2,496	2,571	2,648	2,727	2,809	13,252
		수강료	68,760	70,823	72,947	75,136	77,390	365,056
		사물함사용료	2,250	2,318	2,387	2,459	2,532	11,946
	테니스장위탁료	10,562	10,562	10,562	10,562	10,562	52,810	
	스포츠클럽감면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0	
	소계(a)	185,645	191,437	197,404	203,549	209,879	987,914	
세출	인건비	274,608	279,551	284,583	289,705	294,920	1,423,367	
	기본경비	3,100	3,100	3,100	3,340	3,340	15,980	
	프로그램운영지원	13,600	10,600	10,706	10,813	10,921	56,640	
	환경유지비	27,322	27,595	27,871	28,150	28,431	139,370	
	공공운영비	49,742	51,234	52,771	54,354	55,985	264,087	
	프로그램강사료	32,088	32,409	32,733	33,060	33,391	163,681	
	소계(b)	400,460	404,489	411,764	419,423	426,989	2,063,125	
□ 총 비용(a-b)		△214,815	△213,052	△214,361	△215,874	△217,110	△1,075,211	

4. 재원조달방안

- 가. 민간위탁금 세출 예산 편성(구비100%)

5. 덧붙이는 의견

- 가.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생활체육과 김현우 (☎9852)